

## 2025년도 「악취저감기술 지원」 안내

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「악취방지법」 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 「악취저감기술 지원」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, 관련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▣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- 신청주체: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
- 지원대상: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\*
  - \* 중소기업 중 '악취배출사업장', '지자체 요청 사업장' 및 음식점 등 '생활악취유발 사업장'
- 소요비용: 없음
- 지원내용
  -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
  -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
  - 악취물질 측정·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
- 신청서류
  - 첨부참조: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, 정보보호요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
  - 별도작성: **중소기업확인서\***, 사업자등록증, 공정도, 악취물질 처리계통도
    - \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mss.go.kr>)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
- 기술지원 신청방법
  - 지자체: 전자문서(공문) 신청
  - 사업장: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
    - 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(살리텍 빌딩 2층),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
    - 연락처: (전화) 032-570-1726, (Fax) 032-570-1740
    - 이메일: odorcenter@keco.or.kr